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9조 개정, 제39조의2 신설)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

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삭제하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같은항 제3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같은조 제2항의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을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전입신고를 할 때”를 “전입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7조의4를 제17조의5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7조의4) 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0호의4서식의”를 “별지 제10호의5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체류”를”을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주소변경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법 제10조의3제1항

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주소변경신고서에 따라 주소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에만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변경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주소변경 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자의 주소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송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변경신고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해외체류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자의 주소변경신고서와 대조·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이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

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를 “시·군·자치구”로 하고, “제출”을 “제출(「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이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주민등록증이 분실 신고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0조제1항 중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 제10호의5, 제15호의2, 제15호의3, 제19호, 제30호, 제3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의 4, 제17조의5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3항,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5서식, 별지 제30호 및 별지 제3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유의사항

1.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하여야하고, 귀국 후 거주할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국내주소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변경하려는 해외체류자는 출국 전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에만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3. 변경할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변경할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변경할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변경할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변경신고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변경될 주소의 세대주와 변경할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3. 변경하려는 사람이 변경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변경신고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5.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변경하려는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므로, 남은 세대의 세대명부 구성 및 세대주 확인 등을 위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귀국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귀국한 사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 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3.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귀국한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귀국한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귀국한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입국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귀국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5. 거짓으로 귀국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해외체류신고된 국내 주소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귀국신고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의 세대주와 귀국한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3. '연락처' 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재등록신고서

※ 3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3쪽 중 1쪽)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방문 신고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입 사유 (※ 주된 1가지)	<input type="checkbox"/>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input type="checkbox"/>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input type="checkbox"/>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입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 (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 사유 (※ 주된 1가지)	<input type="checkbox"/>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input type="checkbox"/>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input type="checkbox"/>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입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3.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 (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6.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7.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8. 체류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商用),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9.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10.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 16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전화번호	
조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조사 개요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 내용	현장방문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 수도·전기·가스 사용여부, 우편수령 여부, 취사·가재도구 존재 여부 등 생계·숙식 여부를 확인		
	대상자인술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 대상자 부재 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대상자의 휴대전화기 등록된 경우 통화 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단, 실거주자-주민등록표 불일치 시 반드시 대상자 대면 조사)		
	참고인진술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 이·통장, 주변 주민 등 면담 및 진술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실거주자-주민등록표 대조·확인	※ 해당 거주지의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한 후, 불거주-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미등재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기재합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남/여)	실제 거주 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등재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거주 []불거주	[]등재 []미등재	
	종합의견	※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되, 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등재 인원 불일치 시, 그 상세 사유를 조사하여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확인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이 (통) 장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

유의사항

1.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증, 사실조사원 증명서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진(남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진(여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거주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신청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방문	[] * 신청기관 방문이 아닌 경우 수령을 희망하는 주민센터 기관명을 기재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신청	[] 미신청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이장	가족 증명 가능 서류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왼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평면	왼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cm × 세로 5.5cm)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cm × 세로 5.5cm)	오른손 엄지평면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	수수료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없음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로 이송되며, 미수령 기간이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등록증의 발급기관은 신청 접수일의 업무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7.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25조).

작성 방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 에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3. ‘통장·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로 이송되며, 미수령 기간이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7. 주민등록증의 발급기관은 신청 접수일의 업무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8. 수수료를 내는 경우
 -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나.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9.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에만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변경 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송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신고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해외체류자의 개

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와 대조·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이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7조의5(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

----- 별지 제10호의5서식 의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 (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

⑥ -----

-----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 -----

-----.

1. 2. (현행과 같음)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군·자치구-----

----- 제출(「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④ (생략)

< 신 설 >

같다)하고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이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
 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
 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
 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1.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주민등록증이 분실 신고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신청[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⑧ (현행과 같음)